

2021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내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근로복지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근로복지증진과 경쟁력 있는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우수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기업 내 근로복지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 (사업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 (주최/주관) 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지원규모) 10개 기업 인센티브 지원

구 분	30인 이상	30인 미만
선정 업체 (10개소)	5개소 (1개소 당 최대 3천만원 지원)	5개소 (1개소 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성장촉진지역 : 2개소 * 일반지역 : 3개소	* 성장촉진지역 : 2개소 * 일반지역 : 3개소

- (지원내용) 건강증진시설, 식당 리모델링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업종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붙임 5),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관련업(붙임 6) 중 하나에 속하는 기업
- *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여부는 기업의 주 영위 사업 관련 서류 제출 시 개별 판단

- (공통) 사업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운영) 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기업은 2년 기준 완화
 - * 신청자격 제외대상 : 2016~2020년도 근로(복지)환경개선 관련 수혜기업

□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일반지역

- ☞ 30인 이상 :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5%이상이며 청년고용 5명 이상 증가
- ☞ 30인 미만 :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3%이상이며 청년고용 3명 이상 증가

○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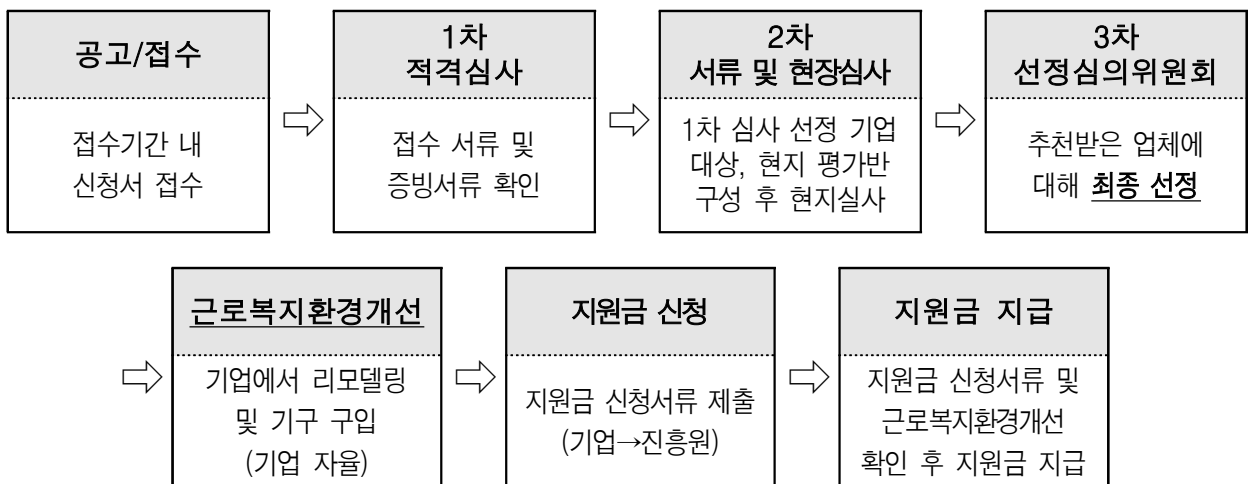
- ☞ 30인 이상 :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3%이상이며 청년고용 3명 이상 증가
- ☞ 30인 미만 :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2%이상이며 청년고용 2명 이상 증가
- ☞ 2년 미만 신규 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률 30%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청년 기준 : 만 15세 ~ 만 39세

○ 청년고용증가율 : 19년 12월 말 대비, 20년 12월말 고용보험기준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심사제외

○ (선정 및 지원 방법)



* 세금체납, 기업대표 사회적 물의야기, 청년실업 해소에 역행하는 기업운영 등 부적격 사항 조회 시 차순위자 선정

□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다음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근로복지환경개선 진행(리모델링 및 기구 구입 등)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전 근로복지환경개선 진행 시 지원 불가

○ (지원금 산정 방식)

- 총 공사(구입)비용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공급가액과 VAT는 기업에서 부담
ex) 30인 이상, 총 공사(구입) 비용 44,000천원

총 공사(구입)금액	공급가액		VAT
44,000천원 (공급가액+VAT)	30,000천원 (지원금액)	10,000천원 (기업부담)	4,000천원 (기업부담)

- 총 공급가액이 해당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공급가액의 90%만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10%와 VAT는 기업에서 부담
ex) 30인 이상, 총 공사(구입) 비용 3,300천원

총 공사(구입)금액	공급가액		VAT
33,000천원 (공급가액+VAT)	27,000천원 (지원금액)	3,000천원 (기업부담)	3,000천원 (기업부담)

○ (지원금 신청서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다음 근로복지환경개선 진행.완료 후 제출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공사전후(납품)사진
- 비교견적서(2업체이상)
- 계약서(기업+시공(구입)업체)
- 납품서(간이영수증 불인정)
- 시공(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공급자 시공업체, 공급받는자 기업)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년)
- 시공업체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입금증)
- 선정기업 통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

☞ 리모델링(공사) 및 물품구입 선정 업체 자격요건

- <공 통> 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부 가능업체
 ② 사업자등록증상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영위한 업체
- <리모델링> ③ 전문건설업(실내건축) 또는 전기공사업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모집일정 및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1. 2. 17.(수) ~ 3. 3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장/서명날인 후 원본제출)

* 상기 제출시간 이내에 도착분만 인정

○ (접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3층 청년고용지원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담당자

○ (제출서류)

□ [붙임 1]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 경우 제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 [붙임 2] 기업현황

□ [붙임 3]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

- 기업신용평가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19년 1월 말, 12월 말/ '20년 12월 말/ '21년 1월 말)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19년 1월, 12월/ '20년 12월/ '21년 1월)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기업소개(자율양식), 대표자 약력
- 정부·지자체 수상, 인증, 특허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최근 2년)

□ [붙임 4]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디지털·그린뉴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제출/ 붙임6 참조)

○ (유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처분의 제한)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근로복지 환경개선지원 내역(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등)은 사후 지속 관리됨.
-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하며, 업체 선정이 취소됨.
- 제출한 서류는 심사 자료로만 활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043-230-9786)